



제439회국회(정기회)
제1차보건복지위원회

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검 토 보 고

〈 고독사 현장의 수습 지원 근거 마련 〉

■ 박성훈의원 대표발의(의안번호 제19419호)

2026. 9.

보 건 복 지 위 원 회

전문위원 신은호

목 차

I . 개요	1
II . 검토의견	2

I. 개요

1. 박성훈의원 대표발의안(의안번호 제19419호)

가. 제안경위

(1) 제 안 자 : 박성훈의원 등 14인

(2) 제 안 일 : 2026. 6. 23.

(3) 회 부 일 : 2026. 7. 23.

나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1인 가구의 증가에 따라 고독사 문제가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있으나, 고독사 발생 현장의 위생 관리 및 현장 정리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.

이에 고독사 발생 현장의 위생적 복구와 사후 수습 등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명시하고, 그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수립하여 고독사 발생의 사후 처리를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16조의2 신설).

Ⅱ. 검토의견

1. 개정안의 내용

-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고독사가 발생한 경우로서 사망자의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현장의 위생적 회복과 오염폐기물·유품의 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16조의2 신설).

현행	개정안
<u><신설></u>	<u>제16조의2(고독사 사후 수습 지원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독사가 발생한 경우로서 사망자가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현장의 위생적 회복과 오염폐기물·유품의 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</u> <u>② 제1항에 따른 사후 수습 지원의 대상, 범위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/u>

2. 검토의견

- 보건복지부의 고독사 발생 실태조사¹⁾에 따르면, 2024년 고독사 사

1) 2022년 고독사 실태조사(한국보건사회연구원), 2024년 고독사 사망자 실태조사(한국사회보장정보원 고독사 예방조사연구센터)

망자 수는 3,924명으로 전년 대비 263명(7.2%) 증가하였고, 2020년 3,279명 이후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.

< 2018년 ~ 2024년 고독사 사망자 수 현황 >

(단위: 명, %)

구 분	2018년	2019년	2020년	2021년	2022년	2023년	2024년
고독사 사망자 수(A)	3,048	2,949	3,279	3,378	3,559	3,661	3,924
전년 대비 증감율	26.4	△3.2	11.2	3.0	5.4	2.9	7.2
전체 사망자 수(B)	298,820	295,110	304,948	317,680	372,939	352,511	358,569
A/B	0.0102	0.0100	0.0108	0.0106	0.0095	0.0104	0.0109

자료: 보건복지부 [고독사 발생 실태조사(2022, 2024, 2025년)] / 통계청 [사망통계]

□ 고독사 발생 현장은 일반적인 사망 현장과 달리 장기간 방치로 인한 부패와 오염이 수반되는 경우가 많고 혈액·체액·해충 등의 존재로 인하여 위생 및 감염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,

그 처리와 현장 복구 과정에서는 일반 생활폐기물 처리보다 높은 수준의 안전관리와 전문성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고, 적절한 사후 수습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인근 주민의 생활환경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공적 대응이 필요한 측면이 있으나, 현행법에는 관련 규정이 미비한 상황임.

□ 고독사의 사후 수습 현황을 살펴보면, 보건복지부의 ‘고독·고립 예방 및 관리사업’의 지침에서 고독사 의심사례 중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유품정리나 특수청소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, 이에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여건과 상황을 고려한 사후관리 서비스²⁾를 제공하고 있으며,

이 경우 「민법」상 상속·유품정리 관련 법적 문제가 해결된 경우 또는 상속의 법적 처리가 필요하지 아니한 오염물 제거에 한하여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.

- 이와 같이 고독사 발생 이후 사후 수습이 사업지침에만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어 지역별로 그 지원의 대상·범위 및 시행기준 등 사업 운영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,

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고독사 발생 현장의 위생적 회복, 오염폐기물 처리 및 유품 정리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은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고독사 발생 이후의 사후 수습을 보다 체계적·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취지가 타당하며,

세부적인 지원 대상·범위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향후 현장 여건 등을 반영한 탄력적인 제도 운영도 가능할 것으로 보임.

- 다만, 개정안 제16조의2제1항에서 지원 대상을 ‘사망자가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’로 한정하고 있으나, 실제로는 연고자가 존재하더라도 시신 인수를 거부하거나 사실상 사후 수습을 기피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며, 이러한 사례에서 처럼 장기간 고독사 발생 현장의 수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인근 주민의 주거환경 및 공중위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.

개정안의 취지가 고독사 현장의 위생적 회복과 공중위생 확보에

2) 2025년 기준, 고독사 사망자 사후관리(유품정리, 특수청소) 1,316건 지원(자료: 보건복지부)

있다고 본다면, 사후 수습 지원 여부를 연고자의 존재만을 기준으로 하여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실제 사후 수습 가능 여부를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정하는 것이 그 입법취지에 보다 부합하는 측면이 있고,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도 이러한 경우에 장례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,

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 또는 사후 수습을 거부·기피하는 경우에도 현행 사업지침과 같이 상속 등 법적 처리가 필요하지 않은 오염물 제거 등에 대해서는 고독사 현장의 신속한 위생 회복과 인근 주민의 생활환경 및 공공위생 보호를 위해서도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방안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임.

- 참고로, 이와 유사한 취지의 「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」(김정호의원 대표발의, 의안번호 제2218422호)이 발의되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으므로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겠음.

3. 관계 부처 의견

- (보건복지부) 고독사 발생 현장의 위생적 복구 및 오염폐기물·유품 처리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무연고자 등의 사후 수습을 지원하려는 개정안 취지에 공감함.

현재 고독·고립 예방 및 관리사업을 통해 고독사 위험자 또는 고독사 의심사례 중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유품 정리 및 특수청소를 지원하고 있으나, 현행법에는 고독사 발생 이후 현장 정리 및 위

생 회복 등에 관한 명시적인 지원 근거가 없어 개정안을 통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음.

문 의 처

02)6788-5498
